



# 해고 등이 된 외국인분들의 취업지속지원에 대한 안내

코로나19 감염확대의 영향에 의해 해고되거나 실습의 지속이 곤란하게 된 기능실습생 등, **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재취업 및 고용지속을 위해** 당분간 특례조치로서 **최대 1년간의 「특정활동(취업가)」** 재류자격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.

## 대상자

이하의 분들로서, 전직·취업처와 고용계약 (주1,2)을 한 분

- 해고 등이 되어, 실습의 지속이 곤란하게 된 기능실습생
- 해고 등이 되어, 취업상태의 지속이 곤란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  
(재류자격 「특정기능」, 「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」, 「기능」 등)
- 채용내정이 취소된 유학생
- 기능실습 수료 후, 귀국이 곤란하게 된 분 등



(주1) 특정산업분야에 한정됨.

(주2) 특정기능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해 재류의 지속을 희망하는 분에 한정함.

## 신청절차

외국인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·출장소에 「특정활동(취업가)」으로 재류자격의 변경허가를 신청해 주세요.

상기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 중, **전직, 취업회사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, 국가의 지원에 의한 구인사업자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


문의사항은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·출장소로

연락처 일람 <http://www.immi-moj.go.jp/soshiki/index.html>



## 매칭 지원의 흐름

### STEP 1

성명, 연락처, 희망분야 (특정산업분야) 등의 필요사항을 「개인정보취급에 관한 동의서」에 기재하고 제출해 주세요 (주).

(주) 「특정기능」의 경우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, 그 이외의 재류자격을 가진 분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출해 주세요.

「개인정보취급에 관한 동의서」→



### STEP 2

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, 관계부처등을 통해 취업소개기관에 제공

### STEP 3

취업소개기관에 의한 전직·취업처 기업과의 매칭실시

### STEP 4

전직·취업처 기업과의 고용계약 체결



### STEP 5

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·출장소에 「특정활동(취업가)」으로 재류자격변경 신청, 허가